



13월의 보너스, 올해 연말정산 간편해진다

‘개인연금’ ‘연금저축’ ‘현금영수증’ 등 영수증 안내도 소득공제

연말 정산 서류 챙기기 짜증나셨죠?

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개인연금, 의료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만 확인해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.

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여기에 링크된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, 연금저축, 직업훈련비, 현금영수증 사용액, 의료비(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)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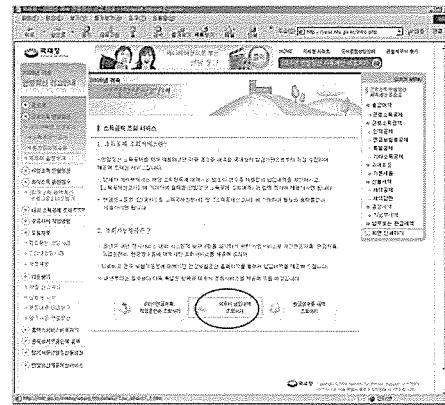
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‘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’에 써내기만 하면 끝난다. 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<http://현금영수증.kr>)에서도,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)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.

다만 의료비의 경우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

아울러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

~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은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.

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.



한번 접속으로 일괄조회 가능

한편, 국세청은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지만, 내년부터는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또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

협료·의료비(비보험 의료비 포함)·교육비도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.

또 국세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,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.

〈문답풀이〉

Q :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일정은?

A :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직업훈련비, 의료비, 현금영수증 등 5개 항목에 대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소득공제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.

내년부터는 보험료, 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며,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될 예정이다.

이럴 경우 국세청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 조회서비스 비율은 2007년 이후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,960만명 가운데 78%인 1,5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
Q :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?

A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 접속 후 ‘조회내역서’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, 지금처럼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. 다만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.

Q :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?

A : 보험급여분만 있는 경우에는 10월 지출분까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됨)에서 출력해 제출하고 11, 12월 지출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. 비보험급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.

Q :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?

A : 개인연금, 연금저축은 10월말까지의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11월~12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자료가 구축돼 있으므로 근로자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조회가 가능하다.

의료비는 10월 지급분까지만 자료조회가 가능하며,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올해 11월말까지의 사용액 전액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.

Q : 인터넷 서비스 제공일은?

A : 12월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조회할 수 있다.

Q : 인터넷 조회방법은?

A : 개인연금과 연금저축, 교육훈련비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 화면에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전송받아 조회할 수 있다.

보험적용을 받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)에서 로그인(회원가입)을 한 뒤 조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<http://현금영수증.kr>)에서 로그인(회원가입)후 ‘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’에서 찾으면 된다. C